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70
----------	-----

2025. 8. 29.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강남구청장(장애인복지과)
-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9.)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가. 제안이유

- 상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선 구매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법정 우선 구매율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1.1%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6조)
- 순화된 표현과 용어로 조문을 정비함
- 타 법령과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3 별첨,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별첨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25. 7. 4. ~ 2025. 7.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I. 개요

-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안은 장애인생산품등 구매목표비율을 1%에서 1.1%로 상향 조정하고, 자구 수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II. 주요 사항 검토

안 제1조(목적)

-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레이므로 목적 규정 에 불필요한 관계 법령 인용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타당함.
- 다만, 현행 조례 제1조에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이를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 개정하려는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 목적 규정 표현 방식

“~~~규정함으로써(~규정하여 ~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기 위하여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자치조례의 목적 규정 표현 방식

“…규정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기 위하여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 목적 규정 작성례

제○조(목적) 이 법은 ~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규정하여 ~에 ~하는 것을/이바지하는 것을/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사항은 현행 조례 대비 용어의 정의를 간결하게 정비한 것이나, 개정안 역시 기본적으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가 법령상의 표현을 재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치조례에서는 가급적 국가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경우 그 표현 방식은 입안 기준과 입법례를 종합해 볼 때 법령상의 표현을 재기재하기보다는 관계 법령을 인용하는 방식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수정 의견은 아래 표와 같음.

개 정 안	수 정의 건
제2조(정의)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	제2조(정의)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말한다.

<p>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p> <p>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가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p>	<p>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가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말한다.</p>
<p><관계법령></p> <p style="text-align: center;">「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p> <p>제2조(정의)</p> <p>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p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가용촉진 및 직업재활법」</p> <p>제2조(정의)</p> <p>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p> <p>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p>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및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에서는 약칭 표현을 현행 “(이하 “장애인생산품등”이라 한다)”에서

“(이하 통칭하는 경우 “장애인생산품등” 이라 한다)” 로 개정하려는 것임.

그런데 일반적으로 약칭은 “{이하 “ . . . ” 이라 한다}” 고 규정하기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통칭하는 경우” 의 표현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현행대로 수정이 필요함.

- 또한,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서술어 부분을 현행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던 사항을 “이 조례를 따른다” 고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아래 입안 기준상의 입법례와 연계하여 개정 사유, 필요성과 실익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의 입법례
 「국어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의 입법례
 제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종합하자면 자치법규는 그 형식과 표현 방식에 있어서 전체적인 법체계 안에서 통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본 개정안의 일부 개정 내용은 입안 기준이나 입법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대로 두는 등의 수정 논의가 필요해 보임.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다)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 제품(이하 “장애인생산물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물등의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 ----- 통칭 하는 경우 “장애인생산물등”----- ----- ----- -----.</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 ----- ----- 조례를 - -----.</p>	<p>다)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 제품(이하 “장애인생산물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물등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구매목표비율 상향(1%→1.1%) 관련(안 제6조제3항)

- 안 제6조제3항의 개정 사항은 장애인생산물등에 대한 구매목표비율을 기존 1%에서 1.1%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인데, 이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관련 고시 개정으로 2025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이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1로 상향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먼저, 본 개정안의 개정 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면, 아래 표의 고시 부칙에서 알 수 있듯 개정된 고시의 시행일은 2024. 8. 7.부터이고, 상향 조정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 적용일은 2025. 1. 1.부터임. 즉, 고시 개정일 및 시행일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조례 개정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은 있는바 상위법

령 등의 개정 사항의 적시 반영 노력이 요구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40호]

제2조(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1.1로 한다.

부칙 <제2024-140호, 2024.07.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목표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한편, 현행 조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의 용어를 하나로 묶어서 “장애인생산품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며(현행 조례 제3조), 각각의 생산품은 아래 표와 같이 개별 법령에서 구매목표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음.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목표 비율 관련]

구 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법적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장애인기업이 직접

	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	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
구매목표 비율	100분의 1.1	1000분의 8	100분의 1

- 이러한 현실에서 조례상 구매목표비율을 1.1%로 통일하는 부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참고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 조례상 단서를 두어 구매목표비율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물론 일률적으로 높은 구매목표비율을 조례에 명시하더라도 이에 대해 현행 조례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노력 의무를 규정한 권고적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로 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음. 그러나 아래 표를 보면 개별 법령에 따라 작성하게 되는 구매계획상 강남구의 2025년 구매목표 비율은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법정 비율과 동일함을 알 수 있는데, 조례상의 구매목표비율 규정이 비록 권고 형태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구매목표비율을 명시할 경우 조례상의 목표와 현실이 일부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장애인생산품등 구매실적 및 구매목표]

구 분	2024년도 우선구매 비율	2025년도 구매목표 비율	법정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0.97%	1.1%	100분의 1.1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2.60%	0.8%	1000분의 8
장애인기업제품	1.53%	1%	100분의 1

(자료: 장애인복지과)

- 이에 각 개별 법령상의 구매목표비율 개정 사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며,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인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개별 법령상 정해진 구매목표비율 이상 장애인생산품등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바, 이와 관련한 법령 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다만, 개별 법령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달리 정해진 현실에서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구매목표비율을 정하는 부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일부 개정 내용은 입안 기준이나 입법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자치법규 제·개정 시 집행부의 면밀한 사전검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물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70호

제안일자 : 2025.8.29.

제 안 자 : 복지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을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수정 및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입안기준과 입법례에 따라 관계 법령을 인용(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 각 개별 법령상의 구매목표비율 개정 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6조)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통칭하는 경우 “장애인생산품등””을 ““장애인생산품등””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우선구매와 관련하여”를 “우선구매에 관하여”로, “조례를”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로 한다.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목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3.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구매

비율

안 제8조 중 “출자·출연기관”을 “출연기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p> <p>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p>	<p>제2조(정의) ----- ----- -----.</p> <p>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u>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u></p> <p>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u>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 ----- -----.</p> <p>1. ----- ----- ----- <u>중증장애인생산품을</u> ----- ----- -----.</p> <p>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u>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말한다.</u></p>

는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생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이하 “장애인생산물등” 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물등의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생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이하 통칭하는 경우 “장애인생산물등” 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물등의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3. (생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장애인생산물등” -----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우선구매에 관하여 -----

-----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생산품등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에는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¹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²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강남구 출연기관을 비롯한 관내 소재한 학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생산품등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에는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¹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²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강남구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관내 소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목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3.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구매비율

제8조(구매 협조요청) --

- 출연기관-----

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말한다.

제4조 중 “있어”를 “관하여”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강남구 본청과”를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남구의회
3.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목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3.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구매비율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중 “기관이나”를 “기관,”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 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청과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3.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관하여 -----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

-----.

1. -----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

2. 강남구의회
3.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에는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② (생략)

③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4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장애인생산품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등의 구매목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3.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구매비율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생
산품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
한 기여를 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10조(표창) -----

--- 기관, -----

-----.

<삭 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0
----------	-----

제출연월일 : 2025. 8. 1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장애인복지과

1. 제안이유

상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선 구매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법정 우선 구매율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1.1%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안 제6조)
- 나. 순화된 표현과 용어로 조문을 정비함
- 다. 타 법령과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3 별첨
-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5. 7. 4. ~ 2025. 7.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장애인생산품등””을 “통칭하는 경우 “장애인생산품등””으로 한다.

제4조 중 “우선구매에 있어”를 “우선구매와 관련하여”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를 “조례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강남구 본청과”를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남구의회

3.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제6조 제3항 본문 중 “1 이상”을 “1.1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출연기관”을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관이나”를 “기관,”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생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이하 “장애인생산품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3.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통칭하는 경우
“장애인생산품등”-----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우선구매와 관련
하여 -----
----- 조
례를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

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2조의3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장애인생산품등을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강남구 출연기관을 비롯한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구매 협조요청) -----

----- 출자·출연기관-----

제10조(표창) -----

----- 기관, -----

<삭 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비용추계에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장애인복지과 사회8급 이주희(02-3423-5885)